

신광은

형법

신정판

신 광 은 편저

각론
기출
OX

『신광은 형법 각론 기출 OX선택형』을 출간하면서 ...

그동안 과분한 애정과 아낌없는 관심으로 『신광은 형법 각론 기출 OX선택형』 출간을 위해 기대와 응원을 해준 많은 수험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처음으로 형법 기출문제집을 출간하면서 그 형식을 OX 선택형으로 구성하게 된 것은 기출 설문 하나 하나를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이 고득점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OX 선택형 공부는 이론, 학설, 판례 등 모든 기출 설문을 지문별로 하나 하나 꼼꼼하게 체크하고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4지선다형 기출문제를 통한 공부가 자칫 답을 찾는 공부 또는 눈에 익히는 공부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출문제를 많이 풀었으면서도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는 수험생들에게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서에 수록된 기출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필자가 직접 기출문제를 풀어보며 설문을 분석, 재구성하고 적절한 해설을 추가하는 등 학습효과 극대화를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최근 14개년(2009년~2023년) 전 직렬 형법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

본 교재에는 최근 시행된 2023년 8월 경찰 2차 기출문제를 포함하여 최근 15개년 (2009년~2023년) 동안 출제된 경찰채용 및 승진, 경찰간부와 해경간부, 법원직·검찰직 등 형법의 모든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여 모든 직렬의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최신 기출문제를 통한 출제경향 파악 및 예상문제에 완벽 대비

전 직렬 최신 기출문제를 통해 앞으로의 출제경향 파악은 물론 과거의 출제경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출제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판단하여 본인의 공부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다가올 시험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풍부하고 완벽한 해설

각 문제마다 풍부하고 꼼꼼한 해설을 추가하여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이해하고 혼자 공부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④ 회독 및 이해 여부 체크 기능을 통한 학습효과 극대화

각 문제마다 상단에 “(회독체크 이미지)”으로 회독 수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험생들이 반복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회독 수를 체크하고, 더불어 문제를 풀고 난 후 오답여부를 O·X 등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이 정답을 맞혔는지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공부함으로써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⑤ 문제와 해설의 효율적인 구성

왼쪽 페이지에 문제, 오른쪽 페이지에 정답과 해설을 수록함으로써 문제를 풀 땐 문제에 집중하면서 바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자의 강의를 듣고 해설 부분에 필기를 하여 추후 문제집을 회독할 때에도 강의를 다시 듣지 않아도 강의내용을 떠올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⑥ 형법 고득점 및 합격을 가능하게 해주는 필독서

본 교재는 최단기간 내에 한 권의 문제집으로 형법각론의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최고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 1) 학습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력을 최단기에 올릴 수 있도록 기출 설문의 정리 순서와 구체적인 표현까지도 세밀하게 고려하여 구성하였습니다.
- 2) 각 주제별로 핵심이론을 먼저 학습한 후 관련 판례를 공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3) 문제에 대한 상세한 해설은 물론 설문과 관련하여 참고할 사안을 요약 정리하였고, 문제를 통하여 체크하고 암기해야 할 부분을 굵은 글씨로 강조함으로써 수험생들이 부족한 시간을 이용하여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⑦ 한 권으로 정복하는 최신, 최적, 최고의 형법 기출문제집

본교재는 전 직렬의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함은 물론 수험생들이 최단기간 내에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풍부한 해설과 정리, 회독체크 및 키워드 강조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세심한 배려를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법령내용과 시험경향에 크게 맞지 않은 문제들은 제외하거나 변경하였고, 여러 교재에서 발견된 오류 등을 바로 잡았습니다. 따라서 형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가장 최적화 된 교재, 최신내용을 포함한 교재, 수험생들의 합격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한 최고의 형법 OX기출문제집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서를 통해 모든 수험생들이 형법 고득점 및 시험 합격이라는 기쁨을 누리길 기원하며, 더불어 힘든 수험기간 동안 건강 유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Bravo Your Life!!

편저자 **신광문**

목차

제II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0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0
제4절 낙태죄	4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6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56
제2절 강요의 죄	70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76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8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00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38
제2절 신용에 관한 죄	178
제3절 업무방해죄	180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08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10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232
제2절 절도의 죄	268
제3절 강도의 죄	288
제4절 사기의 죄	316
제5절 공갈의 죄	392
제6절 횡령의 죄	404
제7절 배임의 죄	448
제8절 장물의 죄	506
제9절 손괴의 죄	524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34
제11절 강제집행면탈	544

01

- 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2장 자유에 대한 죄
- 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5장 재산에 대한 죄

01

**개인적 범익에
대한 죄**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 1 절 살인의 죄

- 1 2 3 (12.법원, 14.학교전담특체·법원, 19.경찰특공대, 20.법원, 22.경찰특공대)
- 01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의 해석으로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 / 분만이 완료되어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때)가 사람의 시기(始期)라고 봄이 타당하다.
- 1 2 3 (13.경간, 15.경찰승진, 17.경찰특공대·해경간부, 21.해경승진, 22.해경승진)
- 02 조산원이 분만이 개시된 후 분만 중인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
- 1 2 3 (14.법원)
- 03 낙태시술을 하였으나 살아서 출생한 미숙아가 정상적으로 생존할 확률이 적은 경우, 그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는 낙태행위의 완성일 뿐 별개의 살인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
- 1 2 3 (13.순경1차, 14.경찰승진·법원, 15.순경1차, 16.경찰승진·해경2차, 17.순경2차, 21.경찰승진, 22.경찰특공대·경간)
- 04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임신부의 상태변화, 의료진의 처치경과 등 제반 사정을 토대로 '의학적으로 제왕절개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를 사후적으로 판단하여 분만의 시기로 볼 수 있다. ()
- 1 2 3 (11.9급국가, 12.9급개론)
- 05 조산사인 甲은 출산을 위해 자신의 조산원에 입원한 37세의 임신부 乙의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업무상의 과실로 그 태아(丙)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고당시 乙은 진통은 없었으나 분만예정일을 14일이나 넘겨 태아(丙)가 5.2kg까지 성장한 상태이어서 의학적으로 자연분만이 부적절하여 제왕절개 수술이 유일한 출산방법이었다. 甲의 죄책은 (무죄 / 乙에 대한 상해죄 / 丙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 / 丙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乙에 대한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 1 2 3 (14.학교전담특체, 17.경찰특공대)
- 06 살인죄의 객체는 행위자 이외의 자연인이고, 살아 있는 사람이기만 하면 생존의 능력·가치·가망 등을 불문하며, 피해자가 자살 도중이라도 이에 가공하여 살해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살인죄가 된다. ()

제 1 절 살인의 죄

- 01 **정답**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
해설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적으로 하고 있는 형법의 해석으로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가 사람의 시기(始期)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81도2621)
- 02 **정답** ○ (대법원 81도2621)
- 03 **정답** X
해설 피고인이 살아서 출생한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한 것을 낙태를 완성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살아서 출생한 미숙아가 정상적으로 생존할 확률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에 대한 확인이나 최소한의 의료행위도 없이 적극적으로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미숙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는 미숙아를 살해하려는 범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도2780)
- 04 **정답** X
해설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는 판단하는 사람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분만개시 시점 즉, 사람의 시기도 불명확하게 되므로 이 시점을 분만의 시기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5도3832)
- 05 **정답** 무죄
해설 임산부 B에게 분만의 개시라고 할 수 있는 규칙적인 진통이 시작된 바 없었으므로 **이 사건 태아는 아직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객체인 ‘사람’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우리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임산부의 태아 양육, 출산 기능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낙태죄와는 별개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라거나 태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5도3832)
- 06 **정답** ○ (대법원 4281형상38)

1 2 3

(16.9급국가, 18.순경2차, 19.해경승진, 21.해경승진)

24 판례에 의하면 甲이 식당 주인 A를 살해할 의사로 농약 1포를 승능그릇에 투입하여 식당에 놓아두었는데, 식당 주인의 딸 B가 이를 마시고 사망한 경우, 甲은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

1 2 3

(15.해경간부)

25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 ()

1 2 3

(21.경찰승진)

26 「형법」 제250조 제2항 존속살해죄의 직계존속은 (법률상 존속 / 사실상 존속)을 의미한다.

1 2 3

(13.순경1차, 14.학교전담특채, 15.경찰승진, 16.순경2차-해경2차-해경간부, 17.해경간부, 18.순경3차-경찰특공대, 19.경찰특공대, 21.경찰특공대-해경1차, 22.법학특채-경찰승진-해경승진, 23.경찰승진-해경승진-해경간부)

27 직계존비속관계는 법률상의 관계를 의미하며,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면 (보통살인죄 /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1 2 3

(19.해경3차)

28 甲이 계모인 乙女와 다투다가 살해한 경우 (보통살인죄 /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1 2 3

(19.해경3차)

29 甲男은 乙女와 정교를 맺어 乙이 A를 출산하자 자신의 처인 丙 몰래 A를 자신과 丙 사이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호적신고를 한 경우, A가 甲을 살해한 경우 (보통살인죄 /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1 2 3

(18.해경간부, 19.해경3차)

30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었음에도 입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이후 계속하여 자신을 양육하여 온 사람을 살해한 경우 (보통살인죄 /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24

정답 X

해설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동인의 처를 살해할 의사로서 농약 1포를 송봉 그릇에 투입하여 공소외인 가의 식당에 놓아둠으로써 그 정을 알지 못한 공소외인의 장녀가 이를 마시게 되어 동인을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공소외인의 장녀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람을 살해할 의사로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에 의하여 살해라는 결과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와 살해하는 결과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공소외인의 장녀에 대하여 살인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68도884)

※ 사람 - 사람, 법정적 부합설

25

정답 O (대법원 2009도17417 전합)

26

정답 **법률상 존속**

해설 「형법」 제250조 제2항 존속살해죄의 직계존속은 **법률상 존속**을 의미한다.

27

정답 **존속살해죄**

해설 직계존비속관계는 법률상의 관계를 의미하며,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간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기는 것이다.(대법원 80도1731)

28

정답 **보통살인죄**

해설 직계존비속관계는 법률상의 관계를 의미하므로 계부나 계모를 살해한 경우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29

정답 **존속살해죄**

해설 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인 혼인 중 출생한 자를 그 호적에 출생신고하여 등재한 이상 그 자에 대한 인지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71다1983) 따라서 甲은 A의 법률상 직계존속이 되어 A가 甲을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30

정답 **존속살해죄**

해설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가 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피해자는 그의 남편인 공소외인과 피고인을 입양할 의사로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피고인을 양육하여 오다가 위 공소외인이 사망한 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을 양육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법률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을 친생자로 한 출생신고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도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자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도8333)

1 2 3 (15.해경간부)
 40 애인 사이인 甲男과 乙女는 정사(情死)를 할 뜻으로 음독하였으나 乙女만 죽고 甲男은 살아난 경우 (자살방조죄 / 위계에 의한 살인죄 / 살인죄)가 성립한다.

1 2 3 (15.해경간부)
 41 甲은 생활이 어려워지자 아들과 함께 자살하려고 독약을 몰래 먹이고 자신도 음독하였으나, 아들만 사망하고 甲은 살아난 경우 (자살방조죄 / 위계에 의한 살인죄 / 살인죄)가 성립한다.

1 2 3 (13.7급국가, 14.경간, 15.법원, 16.경찰승진·9급국가, 19.경찰승진·법원·해경승진, 21.경찰특공대, 22.경찰승진, 23.순경1차·경찰특공대·9급개론·해경승진)
 42 피고인이 7세, 3세 남짓된 어린 자식들에 대하여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들을 물속에 직접 밀어서 빠뜨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복종하는 어린 자식들을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이상 (자살교사죄 / 위계에 의한 살인죄 / 살인죄)에 해당한다.

1 2 3 (20.경간, 22.해경승진)
 43 존속살해죄와 축탁·승낙살인죄는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

1 2 3 (17.7급국가, 22.순경2차·경찰승진·9급개론, 23.경간·순경1차·9급개론·해경승진, 24.경간)
 44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이 있으면 족하고,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1 2 3 (15.9급국가, 18.해경승진, 19.경찰승진, 20.해경간부, 21.해경1차, 22.해경승진·해경2차, 23.순경2차·경찰승진·해경승진·해경간부)
 45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준비행위는 (㉠ / ㉡)

- ㉠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도 족하다.
- ㉡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1 2 3 (14.해경간부, 15.순경1차, 16.해경간부, 17.9급국가, 20.법원, 21.해경승진)
 46 간첩이 간첩행동을 저해하는 자를 살해할 의도로 권총을 휴대하고 남하하였다 하더라도 살해대상 인물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살인 예비죄로 처단할 수 없다. ()

1 2 3 (23.9급개론)
 47 간첩이 불특정 다수인인 경찰관으로부터의 체포 기타 방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무기를 휴대 하였다면 살인예비죄가 성립한다. ()

1 2 3 (11.7급국가, 13.순경1차, 17.순경1차·9급개론, 18.순경3차, 19.경찰승진, 20.7급국가, 21.해경승진)
 48 甲이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丙, 丁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甲에게 (무죄 / 살인예비죄 /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 40 **정답** 자살방조죄
해설 합의에 의한 공동자살(情死)을 기도한 경우, 생존자는 사망자에 대하여 **자살방조죄**(교서를 한 경우에는 교사죄)가 성립한다.
- 41 **정답** 살인죄
해설 아들에게 독약을 먹인 행위는 자살방조나 위계에 의한 살인죄가 아니라 살인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甲이 생활이 어려워지자 아들과 함께 자살하려고 독약을 몰래 먹고 자신도 음독하였으나, 아들만 사망하고 甲은 살아난 경우 **살인죄**가 성립한다.
- 42 **정답** 살인죄
해설 피고인이 7세, 3세 남짓된 어린 자식들에 대하여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들을 물속에 직접 밀어서 빠뜨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 자식들을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이상 **살인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86도2395) ※ 간접정범에 해당
- 43 **정답** X
해설 존속살해죄는 예비·음모를 처벌하지만 촉탁·승낙살인죄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다.(제255조)
- 44 **정답** X
해설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도7150)
- 45 **정답** ㉠
해설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준비행위는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9도7150)
- 46 **정답** O (대법원 4298형상308)
- 47 **정답** X
해설 간첩이 간첩행동을 저해하는 자를 살해할 의도로 권총을 휴대하고 남하하였다 하더라도 살해 대상 인물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살인예비죄로 처단할 수 없다.(대법원 4292형상154)
- 48 **정답** 살인예비죄
해설 甲이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丙, 丁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甲에게 **살인예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도7150)

제 2 절

상해와 폭행의 죄

1 2 3

(19.9급국가, 20.해경승진)

49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 ()

1 2 3

(17.순경2차, 19.9급국가, 20.해경승진)

50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외모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1 2 3

(12.순경1차, 13.경간, 14.경간, 15.경찰승진)

51 피해자의 음모의 모근 부분을 남기고 모간 부분만을 일부 잘라냄으로써 음모의 전체적인 외관에 변형이 생겼다면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

1 2 3

(11.경간)

52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두 상해에 해당한다는 견해에 의하면 사람의 신체에 상처를 입힌 경우뿐만 아니라 눈썹, 머리카락을 절단하는 행위도 상해에 해당한다고 한다. ()

1 2 3

(18.경간, 19.경찰승진·해경간부, 24.경간)

53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 / ㉡)

- ㉠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피해자의 신체·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나 신체·정신상의 변화와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2 3

(10.순경1차, 12.법원, 14.경간, 15.경찰승진, 17.경간, 18.해경1차, 19.순경2차·법학특채·9급국가, 20.해경승진, 21.경찰특공대, 24.경간)

54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더라도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생리적 기능의 훼손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1 2 3

(17.순경2차, 19.순경1차, 20.경찰특공대, 22.경간)

55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

제 2 절 **상해와 폭행의 죄**

49 **정답** ○ (대법원 82도2588)

50 **정답** ○ (대법원 99도3099)

51 **정답** X

해설 음모는 성적 성숙함을 나타내거나 치부를 가려주는 등의 시각적·감각적인 기능 이외에 특별한 생리적 기능이 없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음모의 모근(毛根) 부분을 남기고 모간(毛幹) 부분만을 일부 잘라냄으로써 음모의 전체적인 외관에 변형만이 생겼다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야기하기는 하겠지만, 병리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그것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99도3099)

52 **정답** ○

53 **정답** ㉠

해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피해자의 신체·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나 신체·정신상의 변화와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도9794)

54 **정답** X

해설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96도2529)

55 **정답** ○ (대법원 2017도3196)

- 1 2 3 (18.7급국가)
56 甲은 A 몰래 졸피뎀(Zolpidem)이라는 수면유도제를 성인권장량의 2배로 커피에 몰래 타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총 13회에 걸쳐 강간하였고, A는 의식을 회복한 후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으나 범행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경우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
- 1 2 3 (10.순경1차)
57 8세인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외음부에 염증이 발생한 경우 상해에 해당한다. ()
- 1 2 3 (13.경간, 15.경찰승진)
58 피해자가 소형승용차 안에서 강간범행을 모면하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물리적 충돌로 인하여 입은 우측 슬관절 부위 찰과상 등이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
- 1 2 3 (10.순경1차, 17.해경1차, 19.9급국가, 20.해경승진, 22.법학특채)
59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애를 일으킨 때에는 외관상 상처가 없더라도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
- 1 2 3 (17.경간, 20.경간, 21.법원, 22.해경승진, 23.해경승진)
60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
- 1 2 3 (23.경간)
61 강간범죄의 피해자가 겪은 불안, 불면, 악몽, 자책감, 우울감정, 대인감정 회피 등의 증상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포함된다. ()
- 1 2 3 (14.경간, 15.순경2차, 16.경찰승진, 18.해경간부, 19.해경승진, 21.해경2차, 22.법학특채)
62 난소의 제거로 이미 임신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했다 하더라도 그 경우 자궁을 제거한 것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 것이거나 생활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고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1 2 3 (12.순경1차, 14.경찰승진, 17.해경1차)
63 피해자가 성경험을 가진 여자로서 특이체질로 인해 새로 형성된 처녀막이 파열된 경우 강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처에 해당된다. ()

- 56 **정답** ○ (대법원 2015도3939)
- 57 **정답** ○ (대법원 96도1395)
- 58 **정답** ○ (대법원 2005도1039)
해설 40대의 건장한 군인이 중3 여학생을 소형 승용차안에서 강간하려다가 격렬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이다.
- 59 **정답** ○ (대법원 69도161)
- 60 **정답** ○ (대법원 98도3732)
- 61 **정답** ○ (대법원 98도3732)
- 62 **정답** X
해설 난소의 제거로 이미 임신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했다 하더라도 그 경우 자궁을 제거한 것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 것이 아니라거나 생활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라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대법원 92도2345)
- 63 **정답** ○ (대법원 94도1351)